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무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602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11일

발 의 자 : 김종무 의원(1명)

찬 성 자 : 김기대, 김기덕, 김정환,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송아량, 양민규,
이성배, 이영실, 장상기,
전석기, 홍성룡, 황규복
의원(18명)

1. 제안이유

- 선진 옥외광고문화의 정착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옥외광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옥외광고물법」에 규정된 사업자단체와 협력하여 옥외광고대상전, 광고문화 개선사업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옥외광고대상전 등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행사 및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우수광고물 발굴 및 시상 등)”을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으로 한다.

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 제 5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 사업자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각종 행사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 옥외광고대상전 개최
3. 광고문화 개선사업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0조(우수광고물 발굴 및 시상 등) ①·② (생략)</p> <p><u><신설></u></p>	<p>제30조(<u>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u>)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 제5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각종 행사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1. <u>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u></p> <p>2. <u>옥외광고대상전 개최</u></p> <p>3. <u>광고문화 개선사업 등</u></p>

문서번호

2021073000000014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김종무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박주용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7.30

회신일 : 2021.08.10

내용문의 : 02-2180-7954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조제3항 신설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1) 추계결과 = 150,000천원(연평균 30,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0,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2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2~2026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2)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150,000천원(연평균 30,000천원)
- 총비용 = 옥외광고대상전 개최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옥외광고대상전 개최 (제30조제3항)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소계(b)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 총 비용(b-a)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 옥외광고대상전 개최 = 150,000천원
 - = 연간 개최지원 비용 × 5년
 - = 30,000천원 × 5년

※ 연간 개최지원 비용 : (사)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의 「제1회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대상전」 2022 공모전 사업계획서(안)(2021.07)의 개최 소요비용 50,000천원 중 서울시 지원금액 30,000천원 적용(20,000천원은 협회 부담)

[참고자료] (사)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옥외광고대상전」
2022 공모전 사업계획서(안)(2021.07)'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예 산 분 석 관 박주용

☎ 02-2180-7954

e-mail : pjooyong@seoul.go.kr